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8. 11. 15.(목) 총 3매(본문2, 붙임1)
담당부서 주택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영국, 사무관 임승규, 주무관 이진용 • ☎ (044) 201-4089, 3333
보 도 일 시	2018년 11월 1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15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추진

16일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개정안 입법예고

□ **공공택지**에서 **공급**되는 **공동주택**의 **분양가격 공시항목**을 **세분화**하는 내용의 **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개정**이 **추진**된다.

○ **국토교통부**(장관 김현미)**는**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**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**을 **대상**으로 **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**(현행 12개 → 개정안 62개 항목)하는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을 마련하고, **11.16(금) 입법예고**했다.

□ 분양가격 공시는「주택법」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,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.

□ **공공택지 공급주택**의 경우 **현재 12개 항목***을 **공시**하도록 하고 있으나,

* 택지비(택지구입비, 기간이자, 그 밖의 비용), 공사비(토목, 건축, 기계설비, 그 밖의 공종, 그 밖의 공사비), 간접비(설계비, 감리비, 부대비), 그 밖의 비용

○ **개정안**은 **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**하여 **62개 항목**을 **공시**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○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 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**'공조설비공사'**를 **별도 항목으로 구분**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.

* 기존 61개 공시항목의 '오배수 및 통기설비'를 공사의 성격과 내용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'오배수설비'와 '공조설비'로 구분(표준시방서에서도 별도 코드로 구분)

- 오배수설비 : 건축물·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
  공조설비 : 건축물 내 온도·습도 등을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

현 행(12개 항목)		개정안(62개 항목)	
택지비(3)	택지공급가격, 기간이자, 그 밖의 비용	택지비(4)	택지공급가격, 필요적 경비, 기간이자, 그 밖의 비용
공사비(5)	토목, 건축, 기계설비, 그 밖의 공종, 그 밖의 공사비	공사비(51)	토목(13), 건축(23), 기계설비(9), 그 밖의 공종(4), 그 밖의 공사비(2)
간접비(3)	설계비, 감리비, 부대비	간접비(6)	설계비, 감리비, 일반분양시설경비, 분담금 및 부담금, 보상비, 기타 사업비성 경비
그 밖의 비용(1)		그 밖의 비용(1)	

□ **국토교통부 관계자는** "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**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**에 **주택 공급**이 이뤄져 **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**할 수 있을 것"이라고 전했다.

□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**11.16일부터 12.26일까지**(40일간)이고 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**내년 1월 중 공포·시행될 예정**이다.

□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http://www.molit.go.kr) "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"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59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(전화번호: 044-201-4089, 3333 팩스: 044-201-5529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택정책과 임승규 사무관(☎ 044-201-4089), 이진용 주무관(☎ 044-201-33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**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(안)**

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

대항목		세분류	공시내용
1. 택지비(4)		택지공급가격	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
		기간이자	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
		필요적 경비	필요적 경비(제세공과금, 등기수수료 등)
		그 밖의 비용	그 밖의 비용
2. 건축비(58)	공사비(51)	토목(13)	토공사, 흙막이공사, 비탈면보호공사, 옹벽공사, 석축공사, 우·오수공사, 공동구 공사,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, 도로포장공사,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, 정화조시설공사, 조경공사, 부대시설공사
		건 축(23)	공통가설공사, 가시설물공사, 지정 및 기초공사, 철골공사, 철근콘크리트 공사, 용접공사, 조적공사, 미장공사, 단열공사, 방수·방습공사, 목공사, 가구공사, 금속공사, 지붕 및 홈통공사, 창호공사, 유리공사, 타일공사, 돌공사, 도장공사, 도배공사, 수장공사, 주방용구공사, 잡공사
		기계설비(9)	급수설비공사, 급탕설비공사, 오배수설비공사, 위생기구설비공사, 난방설비공사, 가스설비공사, 자동제어설비공사, 특수설비공사, 공조설비공사
		그 밖의 공종(4)	전기설비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설비공사, 승강기공사
		그 밖의 공사비(2)	일반관리비, 이윤
	간접비(6)		설계비, 감리비, 일반분양시설 경비, 분담금 및 부담금, 보상비, 기타 사업비성 경비
	그밖의 비용(1)		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

* 승강기공사는 공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'기계설비'에서 '그 밖의 공종'으로 이동